

- 10월8일 아리셀 참사 서울 추모제 삼성 서초사옥에서 진행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08일

삼성엔 협력사 행동규범 위반한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국회는 박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

아리셀 피해자 유족도 전원 서울 상경 참여

1) 개요

- 일시 : 2024년 10월8일(화) 오후 7시
- 장소 : 삼성전자 서초사옥 (강남역 8번 출구)
- 주관 : 민주노총
- 주최: 공동주최 :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 20여명도 참여
- 추모제 이후 삼성 사옥 행진

2) 취지

- 10월8일로 23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108일을 맞습니다. 지금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은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항의행동을 하는 등 매일 매일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유족들의 폭염과 폭우를 뚫고 진행한 투쟁으로 박순관 대표이사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108일 동안 유족들에게 단 한번의 직접적인 사과도 없었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대표이사였던 박순관은 자회사인 아리셀은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가고, 모기업인 에스코넥만 살리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교섭 요구는 거부한 채, 에스코넥의 공장은 팽팽 돌아가고 있고, 이는 에스코넥과 거래를 유지하는 삼성의 묵인과 공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전지사업부분으로 출발했고,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를 소유하고, 운영자금을 대면서 영업과 매출을 담당하며 한 몸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에서 준법경영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었던 에스코넥은 자회사인 아리셀처럼 불법과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만들고, 협력사에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을 할 것’ 을 요구하며 그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 중단 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행동규범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삼성은 에어컨 설치 수리 기사 폭염 사망, 방사선 피폭등 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가 계속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23명이 사망한 에스코넥 자회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08일, 노동자 시민이 함께 추모하고 삼성에 에스코넥과의 거래 중단,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삼성 서초사옥에서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안)

(1) 추모제 : 삼성 서초사옥 (강남역 8번 출구)

▶ 사회 : 민주노총

구분	내용	
여는 발언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
발언	삼성의 외주화와 노동자 건강권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발언	삼성의 노동자 안전 경시 경영과 책임방기 규탄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님, 김시녀 어머니
문화 공연		류 금신
발언	아리셀 참사와 삼성의 책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김성호 회장
발언	삼성 규탄 및 아리셀 중대재해 투쟁 연대 결의	산별 발언 (금속, 공공, 건설, 서비스, 화섬 등)
영상 상영	아리셀 투쟁 영상	아리셀 참사 대책위
발언	피해유가족 투쟁 현황과 결의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

(2) 행진 : 삼성 서초사옥 순회 행진

● 첨부 자료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삼성의 책임

1) 에스코넥과 아리셀

○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모자기업이긴 하나, 에스코넥이 출연해 아리셀을 에스코넥의 전자사업부문 자회사로 설립.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원 투자 이후 매년 차입금 지급해 운영자금 마련. 지금까지 아리셀에 보낸 차입금은 155억원임. 아울러 에스코넥은 아리셀에 차입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1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도 유치. 에스코넥은 아리셀에 운명자금으로 빌려준 돈 155억원 가운데 60억원을 지난해 출자 전환하면서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남. 출자전환은 아리셀 설립 당시 66.7%였던 에스코넥의 지분율도 현재는 96%로 급증.

○ 에스코넥은 아리셀을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아리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에스코넥 홈페이지에서 아리셀의 배터리를 에스코넥의 생산 품목으로 표기해 홍보하고 아리셀이 제조·판매한 1차 전지 매출을 에스코넥의 '전자사업 부문' 매출로 표기하고 있음. 아리셀의 사업본부장은

에스코넥 대표이사 아들인 박중언이 맡고 있음.

○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운영자금, 영업, 매출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코넥이 아리셀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아리셀은 형식상 별도 법인이긴 하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에스코넥의 전자 사업부 내지 생산공장(사업장)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음

2) 에스코넥과 삼성

○ 아리셀의 대표이사 박순관은 에스코넥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박순관은 과거 삼성시계에서 근무했다. 그 인연으로 2000년 삼영코넥을 설립해 삼성의 협력사로 거래해오다 2009년 에스코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전자에 핸드폰 부품,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며 급성장했다. 주 고객사가 삼성인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에스코넥은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로, 삼성 갤럭시 핸드폰 부품을 납품해왔고, 삼성SDI에는 리튬2차배터리 부품을 납품해 왔음 .

○ 한편, 아리셀은,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 에스코넥의 전지사업부문 자회사로 설립됐다. 설립 때부터 아리셀 참사 발생때 까지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아리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음.

3) 박순관의 쪼개기 경영, 꼬리 자르기 행태

○ 에스코넥 --> 아리셀 ---> 메이셀로 이어지는 경영 행태는 산업안전을 포함한 각종 범망을 빠져 나가기 위한 쪼개기 계약, 위협의 전가임

○ 아리셀의 대표이사 이자 모기업 에스코넥의 대표이사 였던 박순관은 에스코넥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책임이 에스코넥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음. 소기업인 아리셀은 소수 직원만 남겨 정리하고, 에스코넥으로의 책임만 차단하면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인 유족들이 포기할 것이라는 판단에 구속 기소 이후에도 배째라 식의 입장을 거듭하고 있음

○ 임금 체불, 산재 배 보상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도 기업의 쪼개기, 법인 분리 등으로 실질적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임. 중소기업에서 각종 범망을 빠져나가 노동자는 경제적 파탄에 이르고, 불법을 자행한 기업 경영자는 수년 뒤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불법을 반복하는 기업의 행태를 중단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에 있는 삼성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함.

4)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협력회사 행동규범

○ 에스코넥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자신에게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음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제품생산 등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 2. 안전보건).

삼성 SDI의 파트너사는 사업장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 및 유지하면서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파트너사에게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청 기한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 SDI의 파트너사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 서문).

행동규범과 각국의 현지 법령상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높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행동규범 서문).

○ 에스코넥의 삼성전자와 삼성SDI 협력회사 행동규범 위반

-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 삼성 갤럭시 핸드폰 부품을, 삼성SDI에는 리튬2차배터리 부품을 납품해 온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1차 협력 회사임.

- 에스코넥은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회사이므로, 아리셀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아리셀 종사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에 대해 에스코넥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나, 어떠한 노력도 없으며, 박순관 대표이사의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아울러 삼성전자와 삼성 SDI 협력회사 행동 규범을 위반함.

-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한 협력회사 에스코넥에게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책임과 사태 해결을 요구해야 하며, 이 것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에스코넥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해야 함.

1.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버전 6.0. 2024. 3월 개정)
2. 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

(1)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버전 6.0; 2024. 3. 개정) :삼성전자는 본 규범에 따라 삼성전자가 협력회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행동규범 5.12.(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조항:**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자사와 관련 있는 공급업체, 계약자 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RBA 기준이나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거래업체에 관한 실사 및 개선이행 관리를 해야한다.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 까지도 포함된다.

*행동규범 중 <안전보건> 영역에서는 산업안전, 비상사태 대비, 산업재해 예방, 유해인자 노출저감, 위험 설비 안전관리, 안전보건교육(모국어 등 적절한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거래중인 모든 협력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 책임 이행 조항을 두어 이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중단을 할 수 있다.

(2) 삼성SDI도 마찬가지다. “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2023.10.)” 서문에 따르면, 모든 파트너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급업체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파트너사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본 규범 위반시 개선조치가 요청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SDI 파트너사로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LO 및 ISO 등의 기관에서 제정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추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